

화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1995. 7. .

홍이식 의원 의 인

1. 제안이유

'95. 7. 1 부터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을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 조항이 폐지되어 종전 화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의정활동비 추가로 제명 변경

나. 종전 회의시 지급하던 " 일비 " 를 " 회의수당 " 으로 함. (안 제 3조)

다.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월정액으로 " 의정활동비 " 월 35만원 이내에서 지급토록 함 (안 제 2조의 1항 및 제 6조)

라. 여비지급에 있어 종전 회의참석시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과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시에만 지급토록 함.
(안 제 4 조)

3. 참고사항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 규정 및 부칙 제 1조, 동법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

화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순군의회의원의회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1조중 "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를 "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로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화순군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 (회의수당 지급) ① 의원이 회기중에 의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② 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4조 (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본항을 다음과 같이 제 1항으로 하고 제 2항을 신설한다.

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제8조를 제9조로, 제7조를 제8조로,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월 350,000원을 지급한다.

제7조 (중전의 제6조) 중 제목 "일비지급기준"을 "회의수당지급기준"으로 하고, 본문중 "일비는"을 "회의수당은"으로 한다.

제10조 (준용)중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별표1 제목중 "(제7조 제1항 관련)"을 "(제8조 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2 제목중 "(제7조 제2항 관련)"을 "(제8조 제2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p>제4조 (여비지급) <u>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u></p>	<p>제4조 (여비지급) <u>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u></p>
<p>제5조 (여비의 종류) <u>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u></p>	<p>제5조 (여비의 종류) ① <u>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u></p>
<p><u>< 신설 ></u></p>	<p>② <u>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u></p>
<p><u>< 신설 ></u></p>	<p>제 6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u>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월 350,000원을 지급한다.</u></p>
<p>제6조 (일비지급기준) <u>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으로 한다.</u></p>	<p>제7조 (회의수당 지급기준) <u>회의수당은</u> </p>
<p>제7조 (여비지급기준) ① (생략) ② (생략)</p>	<p>제8조 (여비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u>제8조 (삭제) (1994. 9. 14. 조 1358)</u></p> <p><u>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화순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u></p> <p>[별표1] <u>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7조제1항관련)</u>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생략)</p> <p>[별표2] <u>국외여비지급구분표(제7조제2항관련)</u></p>	<p><u>제9조 (삭제) (1994. 9. 14. 조 1358)</u></p> <p><u>제10조 (준용)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u></p> <p>[별표1] (제8조제1항관련) (국내여비지급기준표 현행과 같음)</p> <p>[별표2] (제8조제2항관련)</p>

검 토 보 고 서

□ 조 례 명

- 화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주 요 내 용

1. 의정활동비 추가로 제명 변경

- 화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2. 의정활동비 지급 (신설)

-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 의정활동비 " 로 월정액 35만원을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 (안 제2조, 6조)

3. 회의수당 지급 (개정)

- 회의 (본회의,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기 마지막날에 1일 5만원 회의수당 지급 (안 제3조, 7조)
※ 현 행 : 직무수행상 의회 불참시 및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에도 출석 일수로 보아 일비 지급

4. 여비지급 (개정)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지급 (안 제4조)
-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 (안 제5조)
※ 현 행 : 회의 출석여비 지급규정 삭제

□ 개 정 사 유

-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인 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기준이 '95. 7. 1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

□ 검토결과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